

학교법인 서림학원

2025학년도 제5회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인	재적이사	8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4:00
(회의 소집 통보일 : 2025년 11월 25일(화))
2. 장소 : 비대면 영상회의(ZOOM 활용)
3. 임원 출석 현황

구분	인원	성명
참석 이사	8	류종규, 금명조, 이병대, 최윤재, 양창석, 이일형, 구민지, 류진호
불참 이사	0	-
참석 감사	2	남승한, 유남규
불참 감사	0	-

4. 상정안건
 - 제1호 : 감사 선임에 관한 건
 - 제2호 : 총장 선임에 관한 건
 - 제3호 :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허가 연장 신청에 따른 처분금 용도 변경 정정에 관한 건
 - 제4호 :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의 건
 - 제5호 : 계약직 직원의 연봉제 전환 임용 규정 개정의 건
 - 제6호 :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건
 - 제7호 : 교원 징계 제청에 관한 건
5. 보고안건
 - 법인보고 1호 : 2025학년도 제4회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
 - 대학보고 1호 : 2026학년도 수시 2차 지원현황 보고
 - 대학보고 2호 : 노사협의회 규정과 구성의 건

<간서명>	금명조	이일형	류진호
-------	-----	-----	-----

6. 회의내용

가. 개최선언

(법인사무처 계장 정미선) 이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8명 중 8명 참석으로 정관 제28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 성원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사장 류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학년도 제5회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법인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안심의

법인보고 : 2025학년도 제4회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

(법인사무처 계장 정미선) 2025학년도 제4회 이사회 의결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시오. 이상 법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호 의안 : 감사 선임에 관한 건

(이사장 류종규) 제1호 의안 감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 류종규) 오늘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먼저, 개방감사 선임에 대한 법인계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법인사무처 계장 정미선) 정관 제20조 제2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방감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단수로 추천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됩니다. 현 개방감사 남승환 감사의 임기가 2025년 12월 28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5년 10월 9일 법인은 장안대학교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고, 추천위원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1일 회의를 통해 개방감사 후보자 1인을 단수로 추천하였습니다. 해당 추천 결과는 11월 24일 법인에 공식 통보되었으며, 오늘 이사회에서는 개방감사 후보자 이항열 변호사에 대한 선임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력은 회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류종규) 추천된 개방감사 후보자에 대한 이력서를 검토하시고, 선임 여부를 표결하도록

<간서명>	류종규	이 일 형	류종규
-------	-----	-------	-----

하겠습니다. 이항열 변호사 선임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8명 찬성)

(이사장 류종규) 이어서 일반감사 선임에 대한 법인계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법인사무처 계장 정미선) 일반감사에 대해서는 이사님들께 2025년 12월 4일까지 감사 후보자를 추천해주시도록 요청드렸으며, 국창수 회계사가 일반감사 후보자로 단수 추천되었습니다. 상세 이력은 회의자료 화면을 통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류종규) 후보 추천하신 분 계실까요?

(이사 이병대) 국창수 회계사를 일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며, 추천 사유를 설명하다.

(이사 양창석) 동의합니다.

(이사 금명조) 재청합니다.

(이사장 류종규)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국창수 회계사를 일반 감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명 찬성)

(이사장 류종규) 총 8명 찬성으로 이항열 변호사는 개방 감사로, 국창수 회계사는 일반 감사로 선임되었으며, 차기 감사 임기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호 의안 : 총장 선임에 관한 건

(이사장 류종규) 제2호 의안 총장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법인사무처 계장 정미선) 정관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습니다. 현 이종진 총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8일 만료 예정이며, 금번 이사회에서는 연임 여부에 대한 의결

〈간서명〉	류종규	이 일 형	김승래
-------	-----	-------	-----

이 필요합니다.

(이사장 류종규) 이사님들께서는 현 이종진 총장의 임기와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하시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사 이병대) 이종진 총장의 연임을 제안하며, 혼란기 조직 안정화, 구조개혁 및 재정 지원 사업 추진 등 사유를 설명하다.

(이사 구민지) 동의합니다.

(이사 양창석) 재청합니다.

(이사 금명조) 저도 재청합니다.

(이사장 류종규)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진 총장님의 연임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8명 찬성)

(이사장 류종규) 총 8명 찬성으로 제2호 의안 총장 선임의 건은 이종진 총장의 연임되었으며, 차기 임기는 2026년 1월 9일부터 2028년 1월 8일까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호 의안 :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허가 연장 신청에 따른 처분금 용도 변경 정정에 관한 건

(이사장 류종규) 제3호 의안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허가 연장 신청에 따른 처분금 용도 변경 정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법인사무처 계장 정미선) 해당 안건은 지난 4회에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연장 신청 사항 중 처분금 용도 변경 부분 정정에 대한 건입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16필지의 처분 허가 연장 신청과 함께 처분금 용도를 기존의 교비회계 전출 및 수익용 예금 대체 취득에서 교비회계 전출 및 수익용 기본재산 동산 부동산 포함 대체 취득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함께 의

<간서명>	금명조	이원형	류종규
-------	-----	-----	-----

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처분금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처분
허가의 재허가 사항이므로 연장 신청은 원안인 예금 대체 취득으로 하고, 처
분금 용도 변경은 추후 별도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재허가 사항으로 신
청해야 한다고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은 제4회 이사회에서 함께 의
결되었던 용도 변경 내용을 정정하여 교육부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의안입니다. 연장 신청 자체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대로 유지되고 용
도 변경 부분만 원안인 예금 대체 취득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사장 류종규) 이사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사 금명조) 없습니다.

(이사장 류종규) 제3호 의안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총 8명 찬성)

(이사장 류종규) 총 8명 찬성으로 3호 의안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허가 연장 신청에 따
른 처분금 용도 변경 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호 의안 :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의 건

(이사장 류종규) 제4호 의안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인사무처 계장 정미선) 교직원 보수 규정 [별표 23]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구분표 개정 내용
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다.

(이사 양창석) 의사 진행 발언드립니다. 이 건은 대학 소관으로 보이는데 법인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
는지요?

(법인사무처 계장 정미선) 교직원 보수 규정은 법인 소관업무로 법인에서 보고드리게 되어 있
습니다.

(이사 양창석) 네 알겠습니다.

<간서명>	금명조	이일형	류종규
-------	-----	-----	-----

(이사장 류종규) 제4호 의안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총 8명 찬성)

(이사장 류종규) 총 8명 찬성으로 제4호 의안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호 의안 : 계약직 직원의 연봉제 직원 전환 임용 규정의 건

(이사장 류종규) 제5호 의안 계약직 직원의 연봉제 직원 전환 임용 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장 이종진 입장)

(총장 이종진) 계약직 직원의 연봉제 직원 전환 임용 규정 제2조(트랙전환) 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이사 이일형) 계약직 직원과 관련해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2년 또는 1년과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나요?

(이사 이병대) 2년 이내 할 수 있는 건가요? 2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총장 이종진) 관련 규정에는 최대 2년까지로 되어 있고, 우리 대학 역시 최대치인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 이일형) 그럼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1년도 6개월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규정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총장 이종진) 네, 그렇습니다.

(이사 양창석) 공무원도 그렇고 원래 2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계약직을 2년 넘기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으로 짧게 근무하고 정규직의 자질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2년까지 가능한데도 6개월, 1년으로 당기는 게 채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서명>	류종규	이일형	이종진
-------	-----	-----	-----

(총장 이종진) 최근 채용을 진행하는 데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공고를 해야만 뽑을 수 있는 상황이라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연봉 문제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았는데 초임 연봉 기준으로 타 대학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직 기간을 확인해 보았는데 우리 대학처럼 최대 2년으로 하는 대학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1년으로 하고 있었고, 기술직 경우에는 3개월 또는 바로 정규직으로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도 의논해 보았고, 지금의 상황에서 계약직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이병대) 제가 회의 전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은 직원 근무 업적 평가 규정에 보시면 근무 평가 시기가 6월, 12월이고, 최근 업무 평가 실적이 우수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1일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1개월 근무한 걸로 7월 중상반기 근무실적을 평가하게 되고, 계약직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12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냐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1개월분으로 실적평가한 7월의 평가분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규정을 꼭 6개월로 개정해야 한다면, 직원 근무 업적 평가 규정을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총장 이종진) 현재 직원 근무업적평가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므로 이때 문제되는 부분을 함께 개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 이병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채용하는 근무 기간 요건이리든가 근무 실태 평가요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하위 규정인 계약직 직원의 연봉제 직원 전환 임용 규정을 먼저 개정하고 상위 규정인 직원 근무 업적평가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 자체를 다음 이사회에 다시 상정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먼저 고친 후, 심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 이종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규직 전환 평가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그동안의 근무기간과 근무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심의하여 진행합니다. 전체 직원 평가하는 6월과 12월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평가 규정에 있는 정기 평가와 정규직 전환 평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 이병대) 전환 직원에 대해 최근 근무 평가를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체가 그렇다 하여도 규정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대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장 이종진) 예, 최근 근무 업적에 대해 재평가해서 결과가 우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만든 규정이지

〈간서명〉	이종진	이 일 형	최은희
-------	-----	-------	-----

든요

(이사 이병대) 규정이라는 것은 만드는 사람과 제3자가 봤을 때 이해하는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총장 이종진) 적합한 표현이 되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이종진 퇴장)

(이사장 류종규) 제5호 의안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이사회 때 재상정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사 이일형) 총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사 금명조) 동의합니다.

(이사장 류종규) 그럼, 제5호 의안 계약직 직원의 연봉제 전환 임용 규정 개정의 건은 보류 제안과 동의로 제5호 의안은 보류 및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6호 의안 :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건

(이사장 류종규) 제6호 의안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장 이종진 입장)

(총장 이종진) 2026학년도 응급구조학과 신설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을 위한 안정적 학과 운영을 확보하고자 필수 인력인 전임교원 1명의 신규 임용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다.

(이사장 류종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사 양창석) 없습니다.

(총장 이종진 퇴장)

(이사장 류종규) 제6호 의안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간서명>	김명준	이 일 형	류종규
-------	-----	-------	-----

(총 8명 찬성)

(이사장 류종규) 총 8명 찬성으로 제6호 의안 202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호 의안 : 교원 징계 제청에 관한 건

(이사장 류종규) 제7호 의안 교원 징계 제청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장 이종진 입장)

(총장 이종진) 교원 징계 제청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다.

(이사 이병대) 총장님,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총장 이종진) 1건 있었고, 경징계로 징계 처분되었습니다.

(이사 이병대) 경징계가 되면 교수님들한테는 어떠한 피해가 있을까요?

(총장 이종진) 승진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사 이일형) 혹시, 이 건에 대하여 변호사님 자문을 받아 보셨나요?

(총장 이종진) 네, 가 있을 때에는 징계 요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사 이일형) 네, 이번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원의 본질적인 직무에 대한 사항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는 교원의 정직성과 같은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하시지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건인지, 징계로 가야하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총장 이종진) 저의 의견으로는 우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자문 결과도 그렇고, 저도 판례를 찾아보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간서명>	류종규	이일형	최승규
-------	-----	-----	-----

(총장 이종진 퇴장)

(이사장 류종규) 7호 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교원 징계 제청에 관한 건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명 찬성)

(이사장 류종규) 총 8명 찬성으로 7호 의안 교원 징계 제청에 관한 건은 징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안건 제1호 : 2026학년도 수시 2차 지원현황 보고

(총장 이종진 입장)

(총장 이종진) 수시 2차에서는 약 397명 일반 전형 338명, 성인 학습자 전형 59명을
모집합니다. 결과는 11.8 대 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작년 수시 2차 지원자
총 2,294명 대비 올해 총 4,674명이 모집된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안건 제2호 : 노사협의회 규정과 구성의 건

(총장 이종진) 노사협의회 규정(안)과 노사협의회 구성 진행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다.

(이사 이병대) 총장님,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이외 사항에서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직원근무업적평가규정 제8조는 평가 결과를 필요
한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속 상급자가 평가를 수행하는 구조
에서 결과 공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의제기 절차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평가는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 이종진) 절대평가로 시행합니다.

(이사 이병대) 현행 규정은 평가 결과를 요구하면 즉시 공개해야 하는 구조로, 평가자의
소신 있는 판단을 위축시키고 공정성, 객관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
요합니다. 평가 공개는 인사위원회 심의 등 별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성적
요소 위주의 현행 평가 기준에도 정량적 지표를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
니다. 차기 규정 개정 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서명>	류종규	이 일 형	최은희
-------	-----	-------	-----

(총장 이종진) 현행 규정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 관련 개정안을 정비하여 상정드리겠습니다.

(총장 이종진 퇴장)

6. 간서명자 호선 및 폐회 선언

가.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이사장 류종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 할 대표 3인(이사 금명조, 이사 최윤재, 이사 이일형)을 호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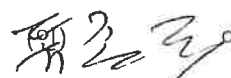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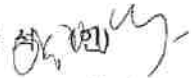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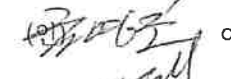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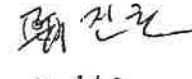

나. 폐회 선언

(이사장 류종규) 이상으로 학교법인 서림학원 2025학년도 제5회 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종료 시각 14시 48분)

2025년 12월 5일

회의록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학교법인 서림학원	이사장	류종규		이사	양창석	
	이사	금명조		이사	이일형	
	이사	이병대		이사	구민지	
	이사	최윤재		이사	류진호	
	감사	남승한		감사	유남규	